

○○시 건설공사장 재해사고 관련 긴급안전점검 결과

◇ ○○시 ○○읍 소재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지하 피트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임

□ 사고개요

- 위치/일시: ○○시 / 7. 19.(화) 10:00~14:00 경
- 피해사항: 1명(중국인 50대 사망)
- 사업규모: 연면적 264,606㎡(지하3~지상24층) / 공정을 52% / 공사금액 3,033억
※ 시공사: ○○건설, 하도급사: ○○건설(주), 사업관리자: (주)○○enc

□ 점검결과

- (원인) 1층 거푸집 자재정리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미상의 사유로 계단을 통해 지하 3층으로 이동 후 물이 고여있는 지하3층 E/V 피트 (2.3m×2.3m×1.7m)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
 - ▶ ① 재해자의 작업공간이 아닌 장소로 임의 이동 및 안전시설을 넘어 진입한 불안정한 행동
 - ② 현장관리자의 근로자 통제 미흡 ③ 침수구간 양수작업 조치 등 위험구간 관리 미흡 등
- 공사장 내 추락 관련 위험요인 등 안전점검(안전) 실시: 시장권고 4건(불임)
- (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) 부분공사 중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) 조사 중



피트 외부



엘리베이터 피트(재해 발생 현장)



상가동 주 출입구 방호선반, 계단 미설치

□ 향후계획

- (고용노동부)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행정처분 검토중²⁾
- 사고사례 시·군 전파 및 관계부서에 통보

1)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, 제167조 (벌칙)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2)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대상 : '22.1.27일 시행, 공사금액 50억 이상,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, 제2조 사망 1명 이상 발생시, 제6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별첨**긴급안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****【 지적사항 】**

분 야	주요 지적사항	비 고
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상가 및 지하 주차장 등 주 출입구에 상부 낙하물 방지용 보호 선반 미설치로 안전사고 위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출입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 ▷ 상가동 주 출입구 계단 발판 미설치로 안전사고 위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표준안전계단 설치 ▷ 지하주차장 누수과다로 피트 및 지하층에 물고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누수 보수·보강 및 조속히 물고임 양수작업 필요 ▷ 근로자 공사장 출입관리 및 동선파악을 위한 시스템 부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출입구(2개소)에 근로자 인식 및 동선파악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	<p>(시 정)</p> <p>(시 정)</p> <p>(시 정)</p> <p>(권 고)</p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 재개 전 안전대책 및 조치에 대한 특별 점검 후 공사재개 	(○○시)